

◆ 1차 상담

- 상담일시 : 2011년 3월 14일(월) 오전11시
- 상담학생 : 박재홍, 고민정
- 상담의 요지 : 의뢰인은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는데,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그랬더니 어학원측에서 일주일 말미를 주고의뢰인을 해고하였다.

◆ 2차 상담

- 상담일시 : 2011년 3월 25일(금) 오전11시
- 상담학생 : 박재홍, 고민정
- 상담의 요지 : 의뢰인과 같이 제주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내역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지만, 학원관계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학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임금체불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금액의 사실관계도 학원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 3차 상담

- 상담일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전11시
- 상담학생 : 박재홍, 고민정
- 상담의 요지 : 학원이 이 날 폐업신고를 해서 의뢰인을 비롯한 3명의 원어민 강사의 비자 문제가 해결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내용증명은 학원관계자가 없는 이유로 3.31(목) 학교로 되돌아 왔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증명

수신 : 제주시 연동 1458-1 4층 402호

캠브리아어학원 데릭김(Derek Kim)

발신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박재홍 노무사(Corr Caitlin Jane의 대리인)

제목 : 미지급 임금 지급요청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였던 Corr Caitlin Jane(이하 Corr)의 대리인입니다. 귀사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요청과 귀사의 해고 통보에 대한 Corr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 Corr는 귀사에 2010년 11월 15일부터 1년간 매월 15일 세전 21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지급일에서 며칠 지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다가 2월부터는 1월분 임금을 Corr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Corr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귀사의 원장인 Derek Kim은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4.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3월이 되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3. 7. Corr는 부득이하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이하 노동청)에 귀사의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5. 그런데 귀사의 Derek Kim은 노동청에 진정한 사실을 이유로 당일 Corr에 대해 3. 15.을 해고일로 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Corr는 한글로 된 해고 통지서에 회사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바,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erek Kim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6. 귀사는 3. 7. 20만원을 입금한 뒤 나머지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Derek Kim은 Corr 또는

Corr의 친구인 김상미 씨 등을 상대로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위와 관련한 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7. 메일에서 귀사는 Corr의 미지급 임금이 3,702,780원이라고 하면서 입금된 20만원을 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168,264원, 한국행 항공비 1,199,700원을 제하고 2,302,911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 또한 약 6개월 동안 일하는 조건에 서명하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면, 20만원을 제한 3,502,780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별도로 다른 강사를 구하기 전까지 최대 2주간 더 근무하게 되 다른 학원을 알선해줄 터이니 그 학원으로부터 위 항공비를 받는 조건의 계약서에 서명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도 제시하였습니다.
9. 그러나 Corr는 임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으며 진정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체없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6개월 전 고의로 사직할 경우에만 한국행 항공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사의 임금체불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본인 및 Corr는 귀사가 3. 25.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항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귀사가 부디 Corr의 의사를 심사숙고하시어 본 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 위임장 1부.

2011. 3. 21.

발신인 박재홍 (인)